

한방 칼럼

탈모이야기 4 - 탈모의 병인



▶ 지난 호에서 이어집니다.

3) 음식 부절

음식은 영양을 섭취하여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물질로서, 음식이 부절하면 영혈을 만들어낼 수 없어 <탈모/모발약화, 모근약화> 등의 제반 모발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질병에 의해서 비위기능이 침조되면, 비위에서 영혈을 못 만들어 내기 때문에 상기 병리가 더욱 심해진다.

4) 노권 손상

정상적인 노동은 기혈의 소통을 촉진시키고, 체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만 과로/노역은 기혈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므로 무력하며 권태롭고 피로 등의 제반 기혈손상을 야기시킨다.

또한 <정신 및 방사과도> 등도 과로에 포함되는데, 이런 제반 노권 손상은 기혈 손상의 병리에 의해 머리를 살짝 잡아도 쉽게 머리가 빠지는 <모발약화 및 탈락> 을 야기시킨다.

5) 외상 및 기타

암환자의 방사선치료와 면역 억제제 등의 과도한 투여는 기혈생성을 억제하면서, 영혈을 손상시키므로 일시적인 모발탈락을 야기시킨다.

이런 사람들 중에 신정이 원래부터 부족하거나, 기혈이 약한 분들은

면역 억제제 투여가 끝나거나 방사선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발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강하게 영혈을 보충하면서, 기혈을 보충하는 치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불량 염색약이나 불량화장품 등에 의해서 모발이 빠지는 것은 <외상>의 병리로 살펴서 치료해야 한다.

6) 선천성 원인/유전

대머리 유전이 있는 경우나 생후 6개월 이전에 모발이 잘 안 자랐던 경우(신정부족)등 선천성 원인/유전자 보유자는 모발관리에 있어서 중점을 뒀야 하는데, 특히 대머리 유전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진행된 곳은 재생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막는 치법에 최대한 중점을 뒀야 한다.

7) 속발성 원인 : 담음과 어혈

기타 <탈모> 환자에게서 담음과 어혈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증을 함께 치료해줘야 한다.

아큐메델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복지 혜택 (Public Charge) 수령과 영주권 신청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식료품 보조)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정부 복지 혜택의 수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새 이민 정책을 지난 10월10일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고 2019년 초반부터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까지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새해 초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 처방약, 롱텀케어, 섹션 8 주택보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과 각종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장문의 생활보호대상자 이민 혜택 규제안의 1차안(proposed rule)에 대해 12월 10일까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발표하고 30일~90일간의 코멘트를 거쳐 새 규정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새 정책이 공식 발효된 후부터 이민 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직전 36개월(3년) 중에 1년간 연방 빈곤선의 15% 이상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민국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곤선 15%는 아래 설명합니다).

새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 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가 본인과 가족

들을 합해 영주권 신청 전 3년 기간 중의 1년 동안 연방 빈곤선의 15%인 개인 1,821달러, 4인 가족 3,165달러 이상 금지 대상 정부 복지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또한 가족이민 초청자들은 재정 보증 기준을 기존 125% 보다 2배 높은 연방 빈곤선의 250%의 소득을 입증토록해서 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 연장이나 비자 변경 시에도 복지 혜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비자 갱신 또는 신분 연장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다만 새로 도입되는 1만 달러의 퍼블릭 차지 이민 본드를 구입하면 영주권 거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ACA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CHIP(아동건강보험), WIC (여성,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은 퍼블릭 차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주권 거절 걱정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전문업체



하시마 건축
HASHIMA CONSTRUCTION INC

물, 화재, 천재지변 보험 크레임 및
수리, 리모델링 일체 통합 서비스

Terry Joe (Mr. 조) 714.745.5958